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2024. 2. 27.(화) 14:00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6년 군사 정권 시절 열악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우리 선배 변호사들이 발간한 인권보고서가 어느덧 서른여덟번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인권보고서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선배 법조인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인권보고서가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매개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뜻깊은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세션 1에서는 ‘인공지능(AI)과 인권’, 세션 2에서는 ‘SNS와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권 침해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만큼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 세션 1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양희철 변호사님, 열띤 토론을 맡아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 사회정책연구실 문정욱 실장님, SKT 부사장으로 계시는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님, 세션 2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신은영 변호사님, 열띤 토론을 맡아주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권일 교수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이승열 변호사님,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 이광수 변호사님, 전체 사회를 맡아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인권보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PROGRAM

2023 인권보고대회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일시 2024. 2. 27.(화) 14:00~16:30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제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사 회 : 우인식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시 간	내 용
14:00~14:10 10분	개회 및 인사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4:10~15:20 주제발표 30분 토론 각 15분 질의토론 10분 70분	session 1 인공지능(AI)과 인권 진행 이광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주제발표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키는 현실 속 인권의 미래 양희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토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과제 문정욱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인공지능과 윤리 장홍성 협회장, 지능정보산업협회, SKT부사장 질의 및 토론
15:20~16:30 주제발표 30분 토론 각 15분 질의토론 10분 70분	session 2 SNS와 인권 진행 이광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주제발표 SNS와 인권 신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토론 SNS와 인권 토론문 이권일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S와 인권 토론문 이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지선 질의 및 토론
16:30	폐 회

CONTENTS

2023 인권보고대회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SESSION 1

인공지능(AI)과 인권

1.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키는 현실 속 인권의 미래 11

양희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과제..... 30

문정욱 실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3. 인공지능과 윤리..... 51

장홍성 협회장 | 지능정보산업협회, SKT부사장

SESSION 2

SNS와 인권

1. SNS와 인권 61

신은영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2. SNS와 인권 토론문 105

이권일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SNS와 인권 토론문 112

이승열 변호사 | 법무법인 지선

2023 인권보고대회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01

SESSION

인공지능(AI)과 인권

주제발표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키는
현실 속 인권의 미래

양희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토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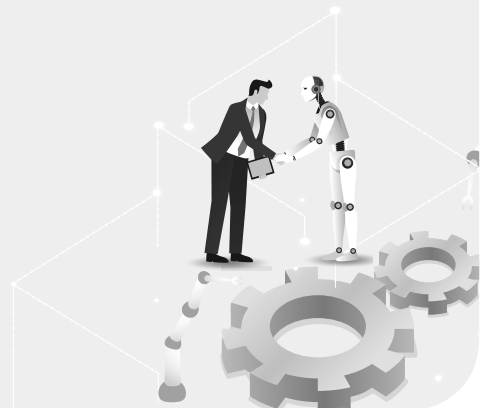
문정욱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인공지능과 윤리

장홍성 협회장

지능정보산업협회, SKT부사장



주제발표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키는 현실 속 인권의 미래

양희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1. 서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스타워즈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를 보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넷플릭스 등 OTT로 영상 콘텐츠를 볼 때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의 심사대를 지날 때도 바로 곁에 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름이 돋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이미 우리 세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된 인공지능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윤리와 인권이 분리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인간이 만든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특징적인 본질인 자율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특별하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할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인공지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반영한 법 제도를 통해 우리 인간의 인권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분류 및 그 법적 성격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가. 인공지능의 개념

앨런 튜링은 처음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함)의 개념을 제시했다.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과 피터 노빅(Peter Norvig)의 인공지능 정의 분류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의 작동”이다.

나. 발달 수준에 따른 인공지능 분류

인간 수준의 지능에 이르지 못하는 약인공지능(Weak Artificial Intelligence)은 현재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개인 비서앱이나, 챗봇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서만 이용되는 도구적 존재다. 이에 반해 강인공지능(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일반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추론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린다. 챗GPT와 GPT-4를 개발해 발표한 오픈AI도 자사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안전한 일반 인공지능을 창조하고 있다(Creating safe AGI that benefits all of humanity)’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다. 다양한 인공지능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인권침해 가능성

도구에 불과한 약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리나 규범에 따라 이런 도구를 이용한 인간이나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기존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한 수준의 범죄나 위법행위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는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 이상의 지능 수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하는 강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이와 달리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일반 인공지능 자체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른바 ‘로봇공학 3원칙’과 같은 내용을 일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미리 삽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최초에는 윤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더라도 일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면 종국적으로는 비윤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인공지능 윤리와 인권의 연계성

가.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인간 측면의 윤리(인공지능의 윤리,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설계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중심의 윤리(machine ethics)를 포괄한다. 현재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주로 논란이 되는 지점은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책무성, 자기정체성 등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만, 향후 인공지능의 그 발전 정도가 고도화될수록 인공지능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점점 집중될 것이다.

나.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규범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의회는 2023년 6월 14일 인공지능 법을 의결하면서 EU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공지능을 위험 기반 규제 방식에 따라 수인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저위험으로 구분하고, 수인불가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였다. 수인불가 위험에는 행정기관 등이 개인의 행동·특성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평가·분류하기 위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범죄·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이미지를 스크래핑하여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확장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 로그 생성, 인간의 감독 등이 확보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한다.

2) 미 국

연방 차원의 규제 시도로 2019년부터 알고리즘 책임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이 의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3. 10. 30.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표준 제시, 사생활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최초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및 워터마크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 23일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했는데 인간성(Humanity)를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 11월경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도 발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2023년 2월 14일 유럽연합의 AI 법안을 참조하여 발의된 7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의결하였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의 도입과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규정했다.

다. 인공지능 윤리와 인권의 접촉면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부분과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포괄한다. 한편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에서 직접 비롯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인간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 면접 심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면접 응시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면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면접 응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활용한 인간 역시 금지된 차별을 포함한 데이터 학습으로 알고리즘 편향이 발생하게 하여 책무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인공지능 윤리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게 되거나, 그 결과물인 인공지능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

각국의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에서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칙 중 중요도가 높아서 주로 언급되는 요소들은 ①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공정성, ② 책무성, ③ 투명성, ④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⑤ 안전성 등이다. 예를 들어 공정성을 위반하는 경우 평등권을, 투명성을 위반하는 경우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각 침해받는 등 인공지능 윤리의 위반은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9. 25.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4. 인공지능의 본질인 자율성 문제

가. 인공지능의 자율성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능력만을 가진 경우에는 소위 ‘작용상 자율성’만이 인정되나, 알고리즘을 통해 실현되는 추론능력 및 선택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소위 ‘결정상 자율성’도 인정된다. 앞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은 결정상 자율성까지 인정되기에 일반적인 물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 블랙박스 문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 곤란

논리칙에 따른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아닌 빅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딥러닝 인공지능의 경우는 특정 입력값을 넣으면 왜 특정 출력값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다. 과정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유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X-AI라는 영역으로 불리며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는 대출심사를 받거나, 채용면접 등 인공지능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확하게 결론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 대출신청자나 구직자에게 결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고, 형식적으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중 침해금지 및 투명성 확보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신고와 의견 제시 절차나, 인공지능시스템의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등 요청 받은 정보의 제공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불이익한 결론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절차를 보장한다. 이런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대중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 결정 절차에 인간이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Human-in-the-Loop)가 필요하고,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오류 수정 업무를 인간이 담당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결정을 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닌 이와 독립된 제3의 조직이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자율 운송수단의 등장과 안전성 문제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에 기초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운송수단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자율주행 5단계인 완전자율주행에 이르더라도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 데이터의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인식 센서의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잦은 사고가 발생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4, 5단계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운전보조기능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현재의 수준에서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초로 하는 기업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결국 테슬라는 2022년 8월 5일 FSD가 주행보조장치인데 마치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2단계 자율주행단계인 주행보조기능을 이용하던 현대자동



차 아이오닉 5 운전자가 남해안고속도로 서부산톨게이트를 통과하다가 톨게이트 연석과 충돌했고, 배터리팩이 충격으로 발화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화재로 사망하였다. 소비자들은 차량 제조사들로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자율주행 기능에 의존하고, 차량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블랙박스처럼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기존의 이른바 ‘급발진’ 사고들처럼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해야 된다면 입증이 곤란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 고위험 인공지능 제한 -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우려

자율무기란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통합정보 및 사전 프로그램 통제 하에 독립적으로 목표를 선정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운용되는 공격형 human-out-of-the-loop 형태의 자율무기체계이다. 이런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무기의 활용이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위험한 작전에 인간 병사 대신 투입되어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전장 상황에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율무기체계가 널리 보급되면 인명 손실의 부담이 적어져 오히려 무력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강대국과 약소국의 군비 격차가 커져 국제적 정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자율무기체계에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국내에서는 국방부가 2023년 3월 국방혁신 4.0 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인공지능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경우 어떤 전투 윤리가 적용될지, 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및 이스라엘과 함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5.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가. 인공지능 개발과 개인정보 침해

최근 들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다. 이제 알고리즘의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성해낸 데이터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도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로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해야 기존에 보이지 않던 가치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를 많이 포함한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시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나 이렇게 익명화되면 가치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28조의2 이하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개인의 재식별을 막되, 활용도는 넓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가명정보의 처리와 결합 권한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 도입 취지와 달리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2020년 10월 출시



되었던 스캐터랩의 챗봇인 ‘이루다’는 학습 데이터에 ‘텍스트앳’이나 ‘연애의 과학’ 등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사용했다. 문제는 이때 이용자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캐터랩은 이렇게 자신의 대화가 다른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나. 개인정보 침해의 확대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능력도 커지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CCTV들이 특정 개인들의 개인정보인 초상, 행동, 신체 특징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 인식 능력과 처리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생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수집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해 왔다. 이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항 내 실시간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기업에도 제공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국관리 구역에서는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용도의 실제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다.

안면인식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범죄 예방과 수사를 이유로 머그샷 데이터베이스를 SNS와 CCTV 이미지와 비교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국토안보부 역시 출입국 통제를 이유로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된 메인주의 「공무원의 안면감시 시스템 사용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에 관한 법률」이 현재 미국내에서 안면인식정보 관리가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졌는데, 중대범죄 수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안면감시 시스템 및 데이터를 수집, 보유 사용 등을 하거나 제3자와 수집·사용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수

집·사용 등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 편향된 데이터 학습과 사회적 가치 기준 고착화 문제

가. 차별의 학습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의견들이 보인다.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처럼 인간처럼 감정이 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자체만을 중립적으로 찾아내 법리를 건조하게 적용하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처음 입력값에 대응하는 출력값이 나오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면서 출력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계속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출력값이 나오도록 수많은 매개변수(parameter)들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문제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실제 기존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가치판단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컴퓨터 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격언인 이른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인공지능의 편향된 데이터 학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피의자로 잘못 인식된 사람은 흑인이 많은데, 안면인식 프로그램 자체가 백인보다 흑인을 잘못 인식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 법원에서 양형에 고려하는 재범 가능성 예측 시스템인 COMPAS(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가 흑인과 같은 집단을 백인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 구조가 인공지능



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인간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면 이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인간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인공지능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으로 인간 사회에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수용 가능한 인공지능 문제 -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교환 비율

인공지능의 활용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충족될 수는 없다. 공정, 안전성, 사생활 보호 등 사회적 가치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모두 충족될 수 없기에 일정한 수준에서 서로 조정을 하여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오류가 있듯이, 인간의 지식과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역시 오류와 불공정이 전혀 없는 무흠결의 존재일 수 없다. 그렇다면 완전히 무흠결인 인공지능이 등장할 때까지 인공지능의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오류나 불공정은 수인하고 대신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향유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선택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오류나 불공정한 결과값 산출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오류나 불공정으로 인한 사후적 책임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7. 인공지능 기반 행위의 법적 책임 소재와 구제 문제

챗GPT의 경우도 약인공지능에 해당하는데, 단지 도구적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약인공지능을 이용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도구를 이용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동물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간이 지시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일반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를 입히는 경우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합한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인간 못지 않은 지능과 자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반 인공지능에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민사 계약법 영역에서는 표현사자에 불과하다. 민사 불법행위법 영역에서는 과실 이론을 강화하거나 과실을 추정하기도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수정해 적용하기도 있다. 비용-효용 분석으로 가장 적합한 자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가장 큰 편익을 얻는 자가 편익책임을 지도록 하자거나, 의무적 보험이나 기금 조성 등 아예 새롭게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법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형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인간이 각 책임을 지고,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른 인간의 범죄 행위는 인공지능의 배후에 있는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만일 일반 인공지능에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위와 달리 민사 계약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본다. 민사 불법행위법에서는 전자인격이나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고대 로마의 노예처럼 제한적으로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형법상 사용자책임이나 엄격책임에 따라 일반 인공지능을 처벌하거나, 사회적 인격체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하는데, 대안적으로 미리 등록된 인간이 벌금형이나 민사책임만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세계 최초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 및 자율주행자동차보험 의무적 가입을 강제했다. 또한 유사시 원격통제를 할 기술감독자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기술감독자를 보유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혔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레벨4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무인자율주행차 운영자가 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나 정부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가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의무적 보험으로 보인다.

8. 인공지능 기반 정보 검색과 계약서 작성·검토 등 적법 여부

가. 인공지능 기반 정보 검색

정보 검색은 인터넷이 대표적인데 검색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나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정보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정보를 검색하려는 시도가 많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금융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구축된 사례를 검색하여 업무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기업 내부에 구축하고 있다. 챗GPT를 이용하는 기업의 정보가 서비스 운영 서버에 저장되고, 다시 학습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에서는 내부 정보나 보유한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에 챗GPT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개인이 위와 같은 인공지능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향후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서비스 운영 서버에 저장되거나 해당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나. 법률 등 전문가 영역 인공지능 활용

의료계에서는 해외의 IBM 왓슨(Watson)이나 국내 뷰노(VUNO), 루닛(Lunit)이 주목을 받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단기 거래와 상품 개발이 일반화된 금융 분야를 넘어서 최근에는 법률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인공지능과 인간의 혼합팀, 인간으로만 구성된 팀이 계약서 검토 경진대회가 벌어졌었다. 당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혼합팀들이 인간팀들을 누르고 큰 점수차로 입상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변호사들이 인공지능이 제시한 허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결과물의 정확도에 의문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는 것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정도의 차이일 뿐 대다수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법률 업무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도입됐다. 일본에서는 최근 법무성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 검토 서비스도 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②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③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용료 등 직접적인 보수만이 아니라 다른 유상 서비스 유도를 통한 금전적 대가관계도 없어야 하고, 통상적인 기업 법무에서 업무상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인 협의나 법적 문제점 검토는 사건성이 없어 허용될 수 있다. 이용자가 미리 설정된 항목에 정형적 내용을 입력해 미리 등록된 계약서 서식에 그대로 표시되는 경우라면 법률사무가 아니지만, 비정형적인 입력 내용에 따라 구체적 계약서가 표시되면 법률사무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외적으로 인공지능 법률자문 서비스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제공되거나, 이용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 적법하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2007년 「법률서비스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 RDG)을 제정



해 비변호사도 등록을 하거나 해당 직업활동의 통상적 범위에서 부수하는 서비스인 경우 재판 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는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타인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계약서 검토나 법률문서 작성이 비변호사에게도 허용되는지 법적 분쟁이 있었다. 독일연방법원은 법률문서 자동 작성 시점 이전의 시스템 설치에 이미 사람이 개입했으므로, 법률문서 작성 시점에는 사람의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로 인정되나, 단순히 이용자가 응답 목록에 입력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시스템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아니어서 법률서비스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향후 국내에서 위와 같이 계약서 검토나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가 가능할 것 인지는 우리 변호사법 제109조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미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문항에 이용자가 답변하는 방식을 넘어 이용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구체적인 법적 조언의 제공인 법률사무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 사무는 그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적법성 등 공공성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할 것이다.

9.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도입과 실업 문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실업의 가능성이다. 이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벌어졌던 러다이트(Luddite) 운

동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노동권이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로봇세’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 산업별 인공지능 도입 현황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주로 육체노동자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동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대체되는 분야를 구분하면 육체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추론, 의사소통, 조정 등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동화되면서 사무직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 지난 5월 정리해고된 8만 명 중 3,900명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라 정리해고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이전인 올해 3월 기준 해고된 사무직 노동자도 15만 명에 이르렀는데,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해고가 1년 전보다 88%나 급증했고, 금융, 보험업에서도 정리해고가 55%나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공지능 로봇 도입이 활발하다. 특히 불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한계에 몰린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은행권에서도 챗봇 활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여타 산업에서도 챗봇 사용이 보편화되어 상담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인력들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간의 일자리 증감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기준 향후 5년간 구조적으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감소는 8,300만 개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 고용의 2%에 해당하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추진되는 행정 및 집행 비서, 데이터 입력, 회계, 장부 및 급여 사무원들이 그 대상인데, 관리직과 전통적인 보안, 공장, 상업 역할에서 2027년까지 일자리 2,60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기술 관련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으로는 AI 및 기계 학습 전문가가 있고, 이어서 지속 가능성 전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 정보 보안 분석가아 이에 해당한다. 재생 에너지, 교육 분야나 농업 장비 운영자, 전자상거래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분야는 각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인류 사회 전체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이로 인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계층과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도입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으로 증가된 이익을 제도적으로 다시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을 해고하는 대신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여 생산성 혁신을 이룬 기업들에게 증가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이른바 ‘로봇세’로 징수하여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증가된 실업으로 인한 소비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실업 증가로 구축이 요구되는 사회 안전망 확보의 한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0. 결 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실생활 도입에 따라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인간이 허위임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이용 과정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 역시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더욱 의존하게 될수록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빈도는 늘어날 것인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결과값이 도출된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를 위한 절차적 권리도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된 기존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늘어나면 다른 인간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격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그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 수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수준과 사회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토론부

2024.2.27. [2023년도 인권보호대회] : 인공지능과 인권, SNS와 인권

“인공지능과 인권” 토론자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문정숙 실장

2024.2.27. [2023년도 인권보호대회] : 인공지능과 인권, SNS와 인권

I.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 · 산업 확산과 윤리 이슈



1.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일상화 가속화

- ▶ 초거대 AI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본격화 되고,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
- ▶ 산업현장, 인터넷에서도 AI가 노동의 양을 줄이고, 질은 높이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의 원천으로 빠르게 확산 중
→ 짧은 보고서 작성에 챗 GPT 활용시 약 37% 작업시간 단축(MIT 연구결과, '23.4)
- ▶ 초거대 AI 플랫폼, API 기반 응용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 및 의료·금융 등 전문분야 新서비스가 출시되면서 AI 일상화 가속화

챗 GPT 활용 일상생활 응용서비스 출시 사례

 인스타키트	레시피 추천 → 식자재 배송까지 원스탑서비스	 인스피디아	여행지 및 항공편, 호텔 등 최적추천	 클리나 쇼핑	수천 개의 온라인 상점 에서 가격을 검색·비교
---	-----------------------------	---	-------------------------	---	------------------------------

1.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으로 기대가 높은 첨단 ICT 기술로,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 사회적 위험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Forbes Technology Council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혜택과 잠재적 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

- 비즈니스 및 건강관리에서 더 나은 성과 창출
- 스마트한 기술 제품 사용으로부터의 이점
- 사이버 보안의 강화
- 인간의 역할 강조 및 사회의 고질적 문제 해결
- 서비스 산업 개선, 맞춤형 서비스 구현
- 여러 장기적 혜택에 대한 기대
- 새로운 직업 및 산업 창출

자료: How Will AI Impact Society in The Next Decade? 11 Tech Pros Weigh In (Forbes)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

- 악의적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이용자·SW·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할 위험
- 시가반 감시체계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정치적 안전 위험
-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 알고리즘에 따른 의도적·비의도적 불이익·차별
- 인공지능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른 부족한 설명, 불투명한 시스템에 내재한 위험

자료: The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ecasting, Prevention and Mitigation (FHI, Oxford Univ.)



2. 인공지능 윤리 이슈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적 이슈 제기와 그에 따른 대응 필요성 증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실생활에까지 밀접하게 스며들어 활용됨에 따라
기술의 오남용·데이터 편향성·프라이버시 침해·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등

“잠복해있던 인공지능 윤리 이슈 가시화”



인공지능 생성 조작 사진으로 인한
일시적 美 증시 하락 (23.5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시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펜타곤 폭발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해 미국 증시가 일시적 하락



인공지능 딥페이크 악용
피싱 사기 발생 (23.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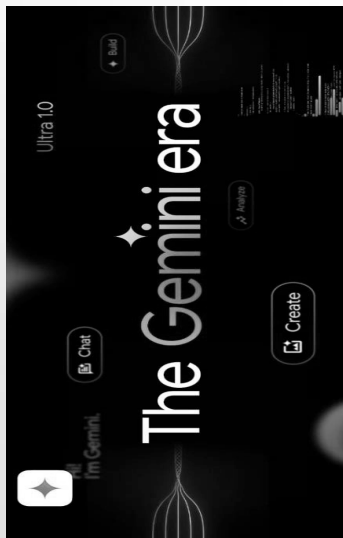
중국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친구 얼굴과
음성을 생성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기 발생



디지털 초상권,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할리우드 배우-작가 동맹파업 (23.7월)

인공지능이 재가공 또는 생성하는 콘텐츠로
인해 지적재산권 및 디지털 초상권 침해,
생계 위협 초래 등을 이유로 배우-작가 파업

2. 인공지능 윤리 이슈



생성 AI 관련 쟁점사항

생성 인공지능의 급속한 경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 초래 우려

* "모든 신기술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수반된다.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AI 챗봇에서도 발생할 것"이라 경고(CNN, 2023. 2. 7)

(표절) 인간이 작성한 글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 시험, 논문 작성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세계의 학문 진척은 허위 또는 표절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학술출판물 관련 ChatGPT 및 챗봇에 관한 권장사항 발표
- 뉴욕시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킴(CNN, 2023. 1. 6.)

(가짜정보 생성) 사실/허위 구분 못하는 생성 AI의 한계로 사실관계 다른 글, 허위정보 확산 우려 존재

- ChatGPT를 활용한 환자 진단과정에서 의학적 사실이 아닌 설명을 제공하, 허위 출처를 제공하기도 함
- LLM의 기술적 특성이 야기하는 "hallucination"

(악의적 이용) 의도한 가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재작을 통해 사회적 혼란 야기

- 시를 통해 유명인의 이미지, 음성 등을 활용한 사기성 광고로 유명인, 소비자 피해 발생
- 지인, 친구, 가족의 음성 등을 시로 합성하여 보이스 피싱에 활용
- 폭탄 제조 및 개발법, 특정 시스템 해킹 방법 등

(학습데이터, 저작권) 학습데이터 원작자 보상 체계, 정보 무단 수집,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

(활용 역량 격차) 생성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사회적 및 소득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



2. 인공지능 윤리 이슈

|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석학들의 연이은 경고



“악의를 갖고 인공지능을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 막기 어려워 ...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로 넘쳐나고 사람들은 더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

제프리 힌튼 / 토론토 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의 언어 습득은 곧 인공지능이 운영체제(언어)를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

인공지능은 그것(진밀함)을 이용해 아이들이 물건을 사도록 조종하고, 정치적 종교적 신념 주입할 수 있을 것”

유발 하이라리 /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 역사학자

기술에 대한 급속한 경쟁 과정에서 기짜정보 생성, 편향성 강화, 환경파괴, 일자리 대체 등 의도하지 않은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

- ▶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조합해 만든 오류를 사실인 것처럼 답으로 제공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극복 필요
- ▶ 美 IBM, 5년 내 7,800명 일자리 인공지능으로 대체
- ▶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과 탄소배출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 우려 존재

2. 인공지능 윤리 이슈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필요성

|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고려한 균형 잡힌 인공지능 윤리정책 마련 필요

-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개발 중단이 아닌 규제책 마련이 더욱 중요

- ▶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동의하지만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제어 가능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시간을 빼앗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속 개발을 추구하면서 이에 맞는 규제책을 찾아야 함 (엔드류 응 스탬퍼드대 교수, 안 르론 뉴욕대 교수)
- ▶ '23년 4월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에서는, 인류의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인식과 동시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 의장)

- 우리기업은 독자적 초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음

- ▶ 국내 대기업이 초기대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LG '엑사원', 카카오 'KoGPT', KT '밀뎀', SKT '에이닷')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재·개정이 경직된 법규범으로는 급격한 기술·사회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 +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와 국제 경쟁력 약화 야기

➡ 문제해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 올바른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로서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필요



2024.2.27. [2023년도 인권보호대회] : 인공지능과 인권, SNS와 인권

II.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 인공지능 윤리정책 흐름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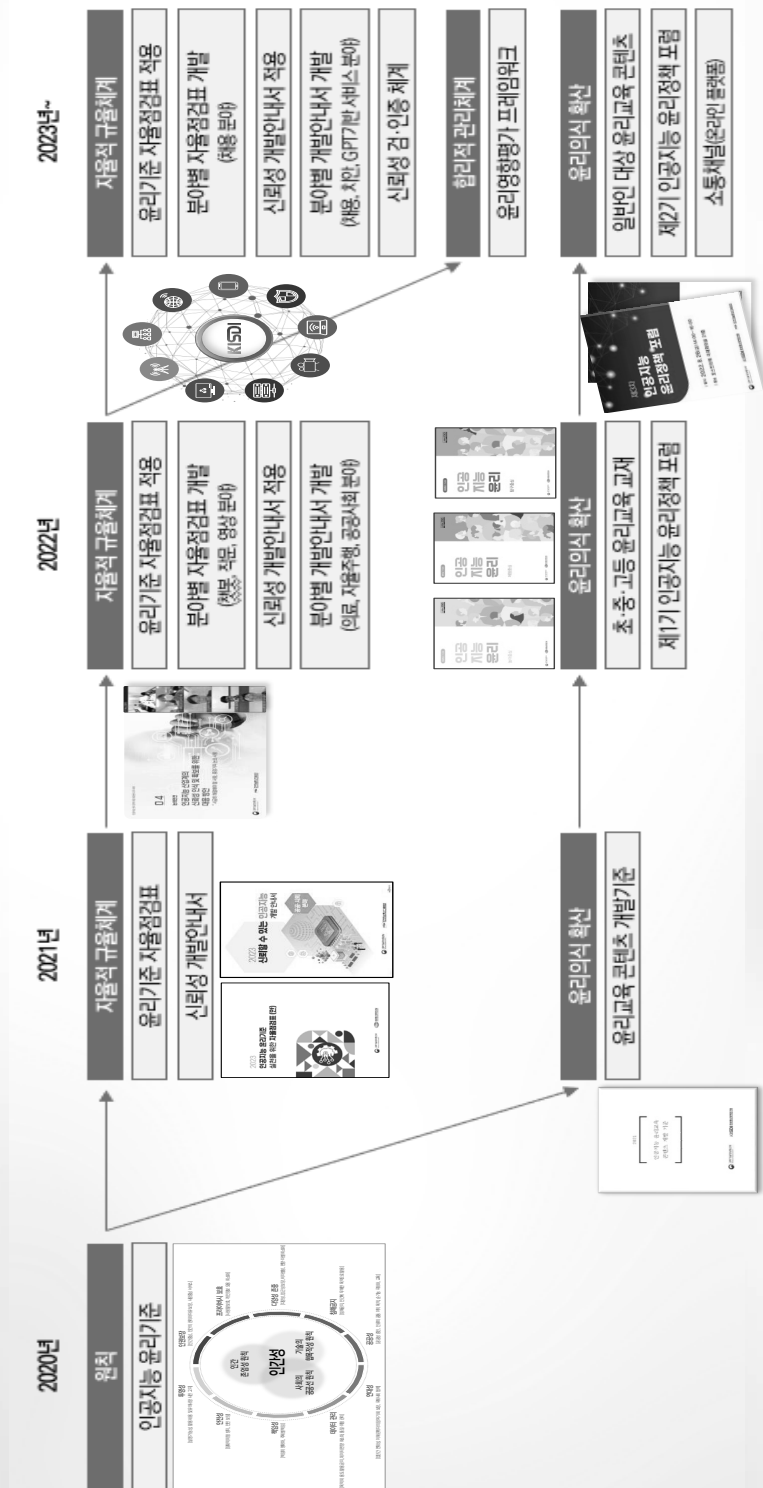
- 세계 각국·국제기구들은 인공지능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위험, 부작용 등)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 우리나라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제정 이후,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22.2 제정, '23.2 개정)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개발 목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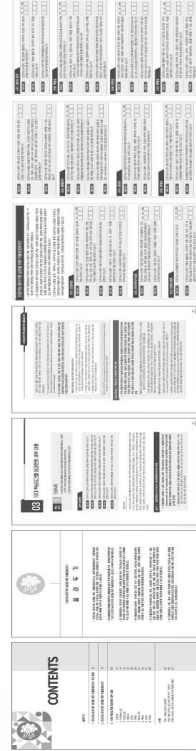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지원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원칙, 10대 핵심요건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수의 문항으로 제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발전 과정에서 각 핵심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요건별로 점검문항 구성

전공영역공학, 이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산업부문(제조, IT, 의료, 교통, 물류, 서비스 등), 세부 단계(기획, 설계, 개발, 운영, 재검 등) 등에 특성이 없는 범용성 있는 문항들을 제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활용 목적, 특징 및 특성에 맞추어 문항들을 선별하고 유연하게 가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항 리스트 제공



책봉 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안)

E01. 인권보장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작문 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안)

영문표장 101. 인문보장

[illegible][illegible]

영상 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안)

E01. 인권보장

[illegible][illegible]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23)

|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 UNESCO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23.8), EU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23.6), 캐나다 '알고리즘 영향평가'(19.4) 포함
다수의 국내외 주요 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하고, 한국 환경 및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프레임워크를 도출

목적

- ▶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실천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 지원
-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제도·정책적 조치 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 ▶ 기업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보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배포·활용하도록 장려

시행 주체

- ▶ 정부 주도 (※ 객관성·공정성·신뢰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 과정에 산·관·학·연 평가위원단,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평가 대상

-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군

평가 요소

-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에 대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영향
- ▶ 윤리·신뢰성 측면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 ▶ 적용 가능한 긍정적 영향 촉진 전략 및 부정적 영향 완화 전략

평가 체계

1단계 평가대상 선정	2단계 기초 분석	3단계 윤리영향평가	4단계 정책 제언 보고서
★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 Ethics of AI ('21.11)

- 권고 초안을 국제전문가그룹, 지역별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21.4월, 6월 두 차례 정부 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21년 11월 합의된 최종안 공개*

* 제41회 UNESCO 총회('21.11.23)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권고안 채택

- 권고의 형식을 통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개선 요구
-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에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은 본 권고안의 4개 가치와 10개 원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명시
- **(4대 가치)** △인권, 기본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 보호와 증진, △환경 및 생태계의 보영, △다양성 및 포용성 보장,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상호연결된 사회 구축
- **(10대 원칙)** △비례의 원칙 및 무해성, △안전 및 보안, △공정성 및 비차별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인간의 감독 및 결정,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 및 의무, △의식 및 리더십, △다자적이고 조정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

• 정책 권고

- ① **(윤리영향평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혜택과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도입 등
- ② **(윤리적 거버넌스·책임)**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다원적, 다각적, 다자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 메커니즘 보장 등
- ③ **(데이터 정책)** 데이터 수집·선택 과정의 적절성과 데이터 보안·보호 조치를 보장 등
- ④ **(발전과 국제협력)** 국제포럼, 정부 간 포럼, 다자적 포럼 등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으로써 인공지능 윤리를 우선시 등
- ⑤ **(환경과 생태계)** 인공지능 시스템 생명주기 전반에서 직간접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환경영향 축소 등
- ⑥ **(젠더)** 인공지능이 잠재적으로 젠더평등을 극대화하고, 여자와 여성의 인권·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과 무결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등
- ⑦ **(문화)** 기록물,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 강화·증진·관리·접근에 적절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가능 등
- ⑧ **(교육과 연구)** 국민들에게 적절한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 제공하여 국민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와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 교육기관, 민간과 협력 등
- ⑨ **(정보통신)**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 등
- ⑩ **(경제 및 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 등
- ⑪ **(의료와 사회적 안녕)** 글로벌 보건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 형성·유지 등



2024.2.27. [2023년도 인권보호대회] : 인공지능과 인권, SNS와 인권

III.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험을 위한 정책 방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1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 지원체계 마련

자율점검표 활용 측면



- » **[자율점검표 내용 구체화]** 인공지능 시스템 기획, 설계, 개발, 운영 단계에서 기업의 CEO, CIO, CDO, 개발자, 연구자가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별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하여 제시
- » **[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점검표 개정]** 재원, 기술력, 인력, 규모 등 기업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한 자율점검표 개발 (예: 생성형 시모델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윤리자율점검표)
- » **[자율점검표 적용 확대 및 컨설팅 지원]** 자율점검표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축적하고, 기업이 윤리적 이슈와 관련하여 상시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기업 연계
- » **[활용 편의성 제고]** 문서화된 자율점검표 활용 한계 극복을 위해 자율점검 온라인 도구(On-line Tool Kit, API 등) 제작·배포

기업 지원 측면



- » **[정책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인공지능 윤리 우수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정부 표창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 제도 마련
- » **[기업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신뢰성 확보와 윤리 기준 준수를 우선으로 하되,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회적 요구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R&D 지원
- »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홍보 강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확산을 위한 교육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신뢰기반 협력 체계 구축



- » 인공지능을 둘러싼 상반되는 이해와 공통되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이해할 필요
- » 기업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인공지능 윤리정책 간 체계성, 정합성,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플랫폼” 적극 운영(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의 기능과 역할 확립 등)

3 인공지능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 »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익, 우려, 위험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본권, 환경생태계, 윤리, 사회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정책적 조치 방안 모색
- »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 수단 강화 : 기업의 자율점검 + 객관적 시각에서의 윤리적 영향 파악
- »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국제 거버넌스 선도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진흥육성 기반으로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4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확립



-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간 체계성, 정합성, 완결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 » 수범 대상인 산업계, 연구계의 혼란과 혼동을 최소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 » 개별 정책 간 **조응 체계** 구축

5 인공지능 윤리교육 및 AI 리터러시 강화



- » 인공지능 윤리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활용·접근 역량에서 인지·이해·학습 역량을 보다 강조하는 AI 리터러시 강화 방안 마련
- » 초·중고, 대학 및 성인, 연구개발자, 공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 세대별, 지역별, 활용수준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리터러시 제고 방안 제시



2024.2.27. [2023년도 인권보호대회] : 인공지능과 인권, SNS와 인권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ai.kisdi.re.kr>)



감사합니다

Thank you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A INFORM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토론



인공지능과 윤리

지능정보산업협회장/공학박사
장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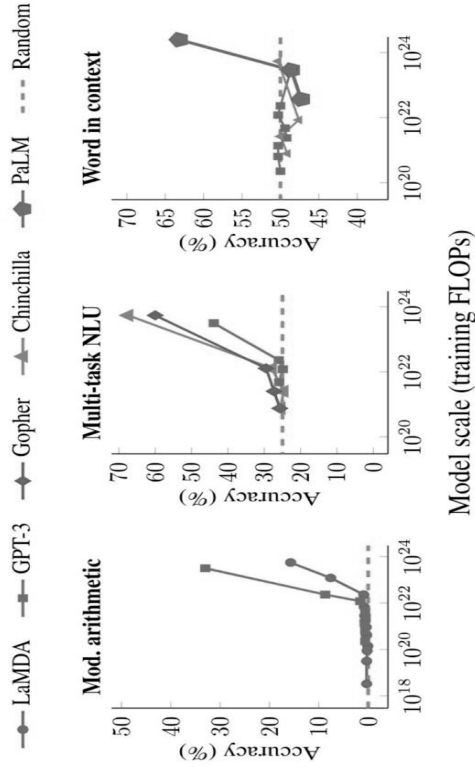
목차

1. (위험성을 내포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2. AI Impacts
3. 결론

1.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Emergent ability

- Rule-driven AI vs. Data (Model)-driven AI
- Black-Box (결과를 설명 불가하며, 가드레일에 의해 통제가 안 됨)
- 양 → 질의 변환, 창발성



(출처 : Jason Wei and Rishi Bommasani)



1.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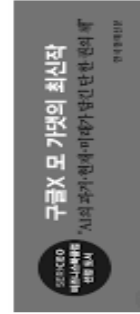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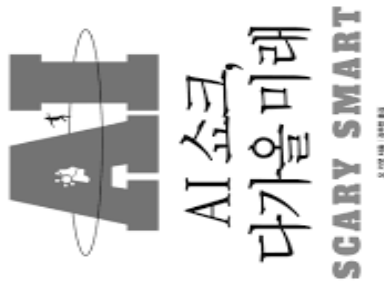
인공지능을 초월

"AI가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인 언어를 생성"



"2049년에는 AI가 인간보다
10억 배 이상 똑똑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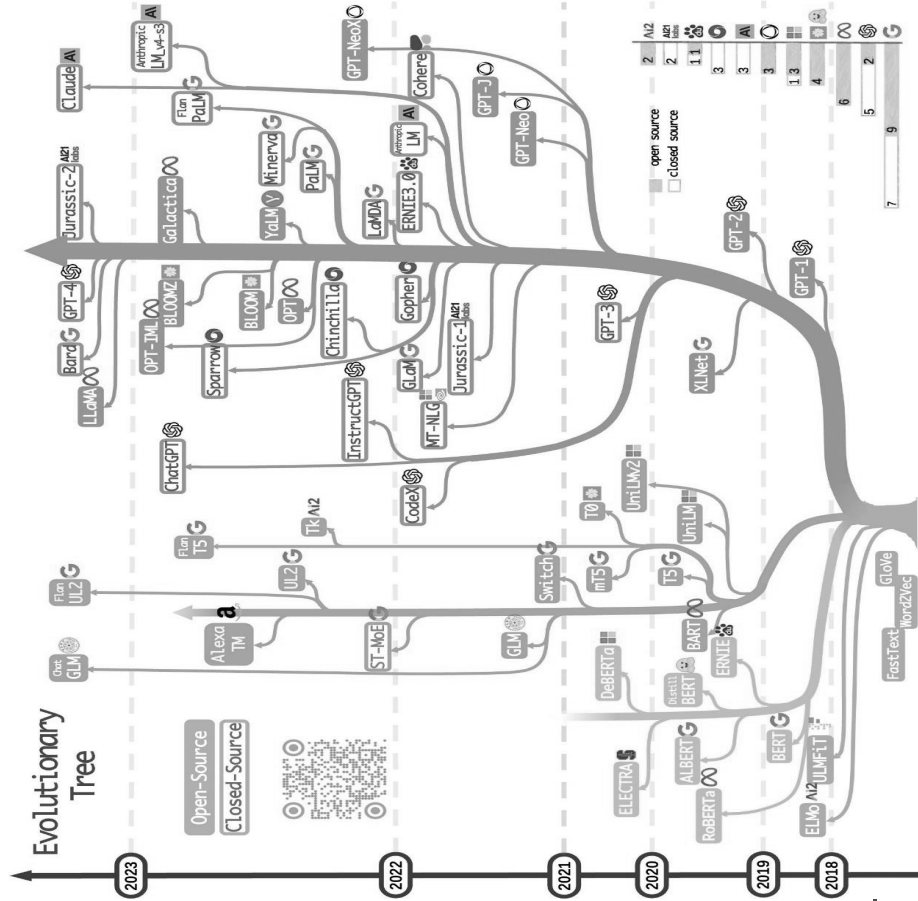
초대형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1.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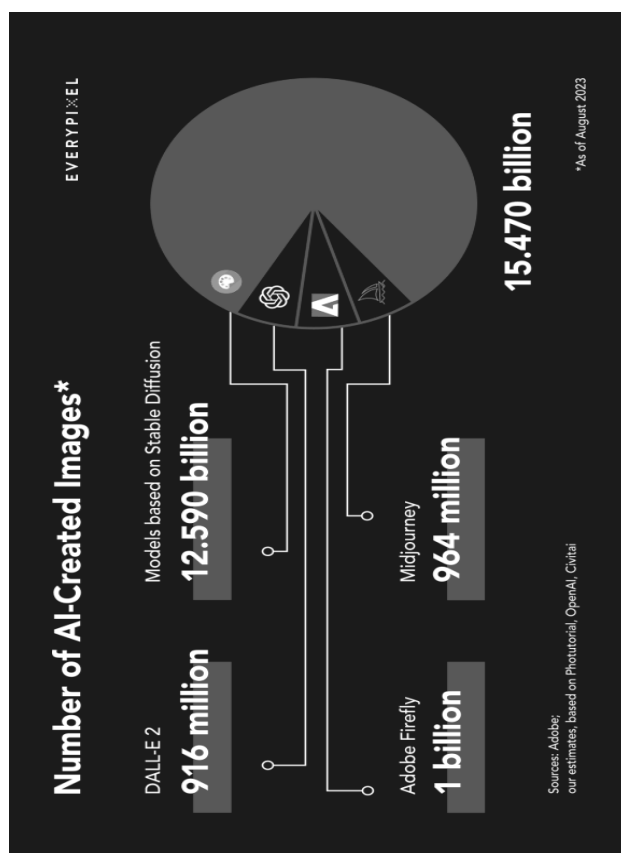
모두의 AI

- AI + X : AI is Anywhere
- Open source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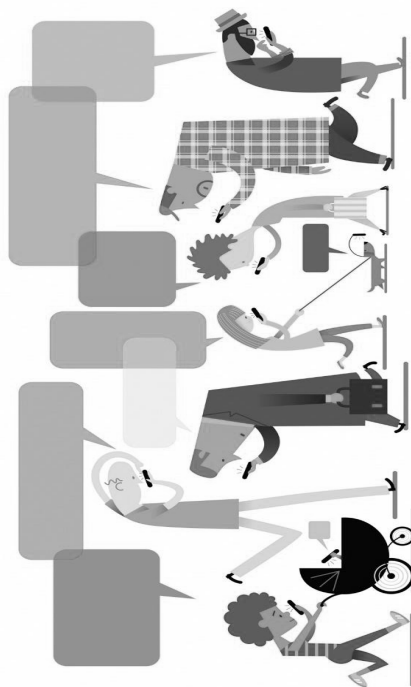


2. AI Impacts

"커튼을 생생/소비 패턴이 변화, 검색이 작음"



"Attention Economy"



“일자리, 양극화, 인권, AI Arms 등등....”

3. 결론 - 인공지능과 인류의 공존

- 디스토피아 vs. 유토피아
- 진흥 vs. 규제
-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유사한 기구 설립 제안 (샘 알트먼)

"We should probably regulate AI before it regulates us"

2023 인권보고대회

인공지능(AI)과 인권, SNS와 인권

02

SESSION

SNS와 인권

주제발표

SNS와 인권

신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토론

SNS와 인권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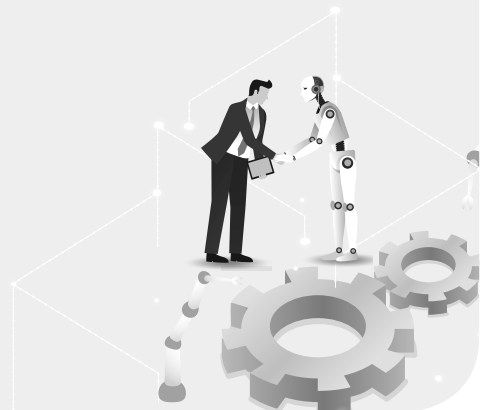
이권일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S와 인권 토론문

이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지선



주제발표

SNS와 인권

신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1. 서 론

우리나라 유튜브 사용자는 2022년 9월 기준 월 4,319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5,178만 명 중 83%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시청시간도 30시간 34분으로 세계 평균(23시간 24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2023년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5,120만 명 중 42%에 해당하는 2,167만 명이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²⁾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SNS를 사용하였고³⁾, 우리나라 국민의 SNS 사용률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⁴⁾

1) 인사이트코리아, “대한민국 ‘유튜브’에 빠지다”, 2023. 6. 1.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6>, 2023. 12. 1. 방문)

2) 연합뉴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4명 인스타 쓴다”, 2023. 5. 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035200017>, 2023. 11. 1. 방문)

3) 세계일보, “국민 절반이 SNS 쓴다… 20대는 5명 중 4명 이상”, 2019. 6. 9.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609503400>, 2023. 11. 1. 방문)

4) 세계일보, “한국 SNS 사용률 세계 3위… 월 이용자 수 ‘네이버 밴드’ 가장 많아”, 2020. 9. 9.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07507164>, 2023. 11. 1. 방문)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틱톡 등의 SNS를 통해 세상 및 사람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듯이 SNS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SNS는 익명성, 엄청난 속도의 전파성(예: 공유, 태그, 리트윗)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중독성, 상대적 박탈감 등 심리적·정신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SNS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 실태, 현행법상 제재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SNS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규제의 한계, 특히 외국계 SNS의 수사 협조 거부로 인한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과 관할로 인한 소송진행의 어려움, 국내법의 한계 내지 부재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까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더해 SNS상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세어런팅’이라는 주제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2.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유형 및 실태

가. 악플

1) 악성 댓글(惡性 對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 reply)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비방이나 헐담)을 말한다. 악플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 등장하면서 점점 확산되었고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과 함께 도를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유명인들이 연이어 악플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화하였다.

2007년 2월 유니⁵⁾, 2008년 10월 최진실⁶⁾, 2019년 10월 에프엑스 설리, 2019년 11월 구하라, 2020년 8월 초순 배구선수 고유민, 2022년 1월 유튜버 챔미, 2022년 2월 배구선수 김인혁 등이 악플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

이에 카카오는 2019년 10월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의 연예 뉴스에서 댓글을 폐지하였고, 같은 해 말 인물 관련 검색어도 폐지하였다.⁸⁾ 네이버도 2020년 3월 5일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고 인물명 검색 결과에서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 네이트는 2020년 7월 7일 네이트 연예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⁹⁾

2)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이 2019~2020년 국내 포털에서 뉴스 댓글 서비스가 중단되자 ‘악플러’들이 활동 무대를 해외 SNS로 옮겨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인들은 대체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외국계 SNS의 경우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국내보다 덜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작성자의 인적 사항 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플러들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⁰⁾

5) 스포츠한국, “죽는 모습 추하다? 악플 유니 2번 죽였다”, 2007. 1. 22.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5834>, 2023. 10. 26. 방문)

6) 스포츠경향, “‘최진실, 악플이 죽였다’ 동료·네티즌 공분”, 2008. 10. 2.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0810022225376, 2023. 10. 26. 방문)

7) 위키피디아, 악성 댓글(https://ko.wikipedia.org/wiki/악성_댓글, 2023. 10. 26. 방문)

8) 매일경제, “설리 자살 이후…카카오, 맨 먼저 ‘악플’ 원천 차단”, 2019. 10. 25. (<https://www.mk.co.kr/news/it/9037841>, 2023. 10. 30. 방문)

9) 머니투데이, “‘악플과 전쟁’…카카오·네이버 이어 네이트도 연예 댓글 폐지”, 2020. 7. 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709251263503>, 2023. 10. 30. 방문)

10) 서울경제, “‘악플 사각지대’ 해외 SNS 플랫폼 어찌나”, 2022. 2. 8.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A4TGY6>, 2023. 10. 30. 방문)



게다가 악플의 수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악플의 대상도 과거에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한 소수였으나 최근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기자 등 불특정 개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¹¹⁾ 심지어 일반인까지 종종 소위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나 촬영에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나온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되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사진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브이로그 등 영상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SNS 시대’에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게시하고 공유한다. 소위 ‘인증샷’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사진에 나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진에 찍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사진의 중심이고 상대방은 배경이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올렸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초상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족행사 중 업체 측이 서비스라며 찍어준 가족사진이 동의 없이 해당 업체 SNS에 홍보용으로 게시¹²⁾되거나 눈썹 문신 기술, 속눈썹 파마 기술을 받은

11) 머니투데이, “연예인 기사 댓글 막았지만, ‘악플’고소는 더 늘어났다”, 2020. 8.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4292699487>, 2023. 10. 30. 방문)

12) 경향신문, “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2019. 2. 1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2131431001>, 2023. 10. 31. 방문)

고객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SNS에 광고로 게시¹³⁾하는 등 업체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 사 칭

다른 누군가가 SNS에서 내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칭 계정은 타인의 사진 등을 무단 게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행동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으며 사기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영업활동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신상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SNS 사칭은 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각종 SNS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반인까지 사칭과 사진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¹⁴⁾

문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와 같은 사칭 및 도용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AI 음성 및 영상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계정 도용 건수는 1,067건으로 전년(751건) 대비 42%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상권 침해 사례가 2019년 45건에서 2022년 114건, 2023년은 9월까지만 9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¹⁵⁾

13) 조선일보, “눈썹 문신했더니 업체 SNS 광고에 내 얼굴이?...모자이크해도 초상권 침해”, 2022. 1. 25.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25/5TNKFWTKERC5DPO-DFZNFVW6WVA/, 2023. 10. 31. 방문)

14) 대구일보, “‘처벌 근거 없다’...SNS 일반인 사진 도용·음란물 유포 속수무책”, 2023. 10. 10.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310100113>, 2023. 10. 31. 방문)

15) 한국경제, “백종원이 투자 노하우 알려준다더니...‘완전 속을 뻔했다’”, 2023. 10. 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03757g>, 2023. 12. 1. 방문)



라. 가짜뉴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 또는 그 매개체 등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오보, 날조, 거짓 정보, 루머, 유언비어, 패러디, 풍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뉴스 전부를 의미하기도 한다.^{16) 1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국내 포털 대신 유튜브,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외국계 SNS에서 악성 루머는 빈번하게 유포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중심지인데, ‘ 가 사망했다.’, ‘ 과 이 이혼한다.’ 등 제목만 봐도 깜짝 놀랄만한 이 가짜 소식들은 뉴스의 형식을 빌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순식간에 퍼진다.

다른 예로 2023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흥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 역에서 칼부림’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하였다. 2023년 8월 4일 X 등 각종 SNS에는 ‘강북구청 앞에서 칼부림 났다’는 제목의 글과 옷에 피가 묻은 남성의 사진이 빠른 속도로 퍼졌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은 빈 병으로 자해했고, 112 신고에도 ‘칼부림’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8월 3일에도 ‘대구 PC방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발생하지 않은 일이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국민들의 공포감만 커지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도 낭비된 것이다.¹⁸⁾ 이러한

16)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의 일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위조작 정보’라고 표현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17) 이 글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가짜뉴스는 가급적 제외하고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18) 서울신문, “‘칼부림 났어요’...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경찰력 소모”, 2023. 8. 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7004008>, 2023. 10. 31. 방문)

가짜뉴스는 미국 폭스(Fox)뉴스와 도미니언 사건, 샌디훅 총기 난사 관련 사건 등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행법상 제재 및 관련 법적 쟁점

가. 악플 등 악성 게시물

1)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댓글, 온라인 게시물 등 인터넷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허위사실이라면 동조 제2항 위반으로 각 처벌된다.¹⁹⁾

한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모욕한 경우,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²⁰⁾

이러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의 전파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후처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문제의 게시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에 온라인상 명예 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②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제도, ③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 등을 두고 있다.²¹⁾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0년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방심위에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 8만 4,541건 중 삭제 처분된 것은 0.56%인 475건, 가해자가 이용 정지 등 해지된 것은 0.02%인 17건뿐이었다. 대부분인 93%는 접속 차단 등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여 방심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형사 절차를 통해 해결할 때까지 가해 게시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²⁾

나.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 751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명예훼손, 모욕, 성적인 발언과 결부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부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객의 가발 시술 사진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올린 인천의 한 가발업체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는 시술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해 블로그에 업로드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추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2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https://remedy.kocsc.or.kr/ddmsIndex.do>

22) 이데일리, “방심위 권리침해 신고 5년간 8만여 건..삭제 조치는 0.56%뿐”, 2020. 10. 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25929640&mediaCodeNo=257&OutLinkChk>, 2023. 8. 28. 방문)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위 사진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²³⁾

한편, 형사처벌은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 금전적 피해, 성희롱 등 명백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관련 범죄로 가능하다.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영복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촬영하여 SNS에 게재하는 경우 비록 배경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 사칭 행위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칭 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타인 사칭만으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렵다. 오늘날 SNS가 개인의 포트폴리오이자 제2의 명함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하는데, 초상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사칭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 금전적 피해, 성희롱 등 명백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판례도 단순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다른 가입 남성들과 채팅하고 전화번호를 준 사칭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소개팅 앱에 가입해 다른 남성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93868 판결.



반(명예훼손)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²⁴⁾

또한 대법원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발생한 사칭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기도 하였다.²⁵⁾ 당시 가해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베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게시물을 올렸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타인을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²⁶⁾

한편, 사칭 계정을 SNS 업체에 신고하면 폐쇄해주기도 하지만 같은 SNS 또는 다른 SNS에 다시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계 SNS의 계정은 폐쇄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계정이 삭제되기까지 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는 홀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²⁷⁾

라. 가짜뉴스

1) 가짜뉴스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의 액수보다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2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2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935 판결.

27) 경향신문, “‘SNS 사칭’ 일상화…피해자는 속수무책, 처벌법은 국회서 낮잠”, 2019. 2. 13.(<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2132123005>, 2023. 8. 30. 방문)

더 크기 때문에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다.²⁸⁾

만약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고, 언론사를 사칭하여 뉴스를 유포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의율된다. 유튜브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 위반으로 자체적으로 신고받기도 한다.²⁹⁾

2)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1인 미디어 포함)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정·반론보도 등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을 냈으나³⁰⁾, 가짜뉴스를 올리는 유튜브는 뉴스라고 이름 붙이는 등 뉴스의 형식을 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공식적인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된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3) 특히 최근에는 정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전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외국계 SNS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미국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음란 표현 등 전세계적으로 불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될 만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가 쉽지 않다.³¹⁾

28) 시사저널, “[이건왜] 대놓고 허위사실 올리는 유튜버…법적 제재 없나요?”, 2023. 4. 9.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45>, 2023. 11. 24. 방문)

29) YouTube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2480034?hl=ko>

30) 미디어오늘, “앞으로 ‘언론사 유튜브’는 언론중재위 조정대상, 가세연은 유보”, 2022. 9. 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15>, 2023. 8. 30. 방문)

31) 이데일리, “‘가짜뉴스’ 천국 유튜브, 규제할 방법이 없다”, 2017. 2. 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7366615832816>, 2023. 8. 30. 방문)



마.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NS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글 등 음란물을 보내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²⁾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처럼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인식 할 수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가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의 DM, 카카오톡과 같은 1:1 메시지로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직접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다른 인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외국계 SNS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여도 외국계 SNS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33) 34)}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연합뉴스, “SNS로 보내온 음란물…성희롱 처벌 못한다?”, 2021. 6. 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07004600640?did=1825m>, 2023. 8. 21. 방문)

34) TV조선뉴스, “SNS 성희롱 신고에 경찰 ‘어차피 못 잡아’…피해 청소년, ‘속앓이’만”, 2020. 12. 1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9/2020121990047.html, 2023. 8. 30. 방문)

4. 문제 해결의 어려움

가. 자체적인 규제의 한계

1) 1차적으로 구글 등의 회사가 큰 수익을 거두는 당사자인 만큼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관리·감독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는 2016년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주요 정책을 도입한 뒤 수십 차례 정책을 개선해왔다. 2018년 유튜브 정책 위반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을 1만 명으로 확충했는데, 이러한 모니터 인력은 2022년 한국어 전문가를 포함해 전세계 2만 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정책 위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해 모니터 인력에게 전송하는 머신러닝 기술 사용을 확대했고,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시켜 유사 동영상 추천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³⁵⁾ 유튜브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삭제된 동영상 수는 13만 1,280개였다.³⁶⁾

그러나 실시간 영상은 차단하지 않고 주로 머신러닝 등을 통한 사후 삭제 처리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신고로 영상이 삭제되는 사례도 드물다 보니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³⁷⁾ 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동영상을 문제 영상으로 감지하는 경우 자동 감지가 93.5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용자는 5%, 정부기관은 소수에 불과했다.³⁸⁾ 또한 구글은 2021년 하반기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많은 콘텐츠를 삭제해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분류된 건이 85%로 대부분이고 ‘명예훼손’

35) 한겨레, “유튜브에서, 나는 고인이 돼 있었다…사망설 ‘눈길도 주지 마’”, 2023. 2. 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77787.html, 2023. 8. 21. 방문)

36) 헤럴드경제, “작년 국내 유튜브 삭제영상 13만개...편집영상 계속 떠돈다”, 2023. 6.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7000296>, 2023. 11. 24. 방문)

37) 한겨레, 앞의 기사.

38) 헤럴드경제, 앞의 기사.



손'은 단 6회로 1% 미만이었다.³⁹⁾

2) 한편,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노란딱지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부적절한 언어, 폭력성, 성인용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및 경멸적인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민감한 사건, 부정 행위 조장 등 유튜브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노란 딱지'(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를 붙여서 유튜버가 광고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굳이 광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후원금을 받는 '슈퍼챗' 기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딱지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히려 일부 유튜버들은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슈퍼챗을 싸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⁴¹⁾

나. 민형사 절차 진행의 어려움

1) 수사 협조 거부로 인한 가해자 특정의 문제

유튜브 등의 영상들이 이미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1인 미디어 포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부가 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외국계 SNS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9) 매일경제, “‘어차피 우리 못잡아’...인스타·유튜브 악플러 판친다”, 2022. 5. 19. (<https://www.mk.co.kr/news/it/10325260>, 2023. 8. 30. 방문)

40) 유튜브 고객센터, 도움말 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162278>

41) 주간동아, “현대차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 유튜브를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 2020. 11. 20. (<https://weekly.donga.com/3/all/11/2245851/1>, 2023. 8. 30. 방문)

만약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가해자의 회원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의 경우 회원 가입 시 확보해둔 이용자의 정보를 비교적 협조적으로 제공하지만, 외국계 SNS처럼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신원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구글은 설립 국가가 미국이고 이에 국내법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는데,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대부분 응답하지 않는다. 실제로 구글을 포함한 상당수 외국계 SNS는 악플 피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아동 성범죄처럼 미국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사건이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관련 범죄 등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외국계 SNS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직접 해당 SNS 계정을 뒤져서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국내법에 따른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43) 44)}

2) 관할로 인한 소송 진행의 문제

관할도 문제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의 신고 정책에 따라 영상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받고도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거나 미국의 구글 본사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하면서, 영상 게시 중단 요청을 검토 처리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구글코리아에 없고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미국 법인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답변하였다. 영상 게시 중단 신고는 미국 본사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하고, 가처분 등 민사소송도 미국

42) 매일경제, 앞의 기사.

43) 연합뉴스, 앞의 기사.

44) TV조선뉴스, 앞의 기사.



의 구글 본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유튜버들이 억울하게 노란딱지를 받고 유튜브의 판단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국내에 위치한 구글코리아는 응하지 않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⁴⁶⁾ 구글코리아는 서울 역삼역에 위치하고 미국 본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구글이 이용자와 구글 간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약관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분쟁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⁴⁸⁾, 구글은 여전히 미국에서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앱 개발사가 자사가 만들어 등록한 앱이 앱 스토어에서 삭제되자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9년 9월 18일 “이 사건 소송은 배포계약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하였고,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부분은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다.⁴⁹⁾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관할합의도 유효”하

45) 국민일보, “한글 신고는 무시하나? 유튜브가 보내온 이해못할 답변”, 2020. 6. 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3934>, 2023. 8. 30. 방문)

46) 매일경제, “유튜버를 괴롭히는 ‘노란딱지’...해결하려면 캘리포니아 가라”, 2022. 7. 28. (<https://www.mk.co.kr/news/it/10403519>, 2023. 8. 30. 방문)

47) 구글, 서비스 약관, <https://policies.google.com/terms>

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19. 3. 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21571>, 2023. 12. 1. 방문)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합506082 판결.

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⁵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유튜버가 구글 측을 상대로 낸 계정해지 처분 무효확인 및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2023년 1월 4일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이용자였으므로, ‘유튜브 채널을 수동적으로만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여 국제사법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에서 관할합의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한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튜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⁵¹⁾

그런데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등 청구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구글 서비스 이용자와 구글 본사 사이에서 적법하게 효력을 가진다”면서도 “구글 본사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계약에선 해당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사법에 따라 기업이 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했을 경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부는 또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50)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원고와 피고 구글LLC 사이에서 구글플레이에 원고 개발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인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 및 관할합의의 특수성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51716 판결.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실시했다.⁵²⁾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구글 본사뿐 아니라 구글코리아에도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 본사라 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구글코리아 명의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봤다.⁵³⁾ 대법원은 원심판결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원심판결에서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정보의 제공 현황을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외국법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열람 및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⁵⁴⁾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은 약관에서 외국 본사 소재지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된다면 국내 법원에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⁵⁵⁾

다. 국내법의 한계 내지 부재

1) 국내 제어장치의 부존재

앞서 언급하였지만,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방송사와 달리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도 적용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즉, 사실상 현재 국내법으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외국 사업자를 직접 제어할 수 없다.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53)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5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55) 중앙일보,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2023. 4. 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883>, 2023. 12. 1. 방문)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심의’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 심의’를 받게 되는데,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반면, 통신 심의는 유해사이트나 불법 정보 유통 등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 등이 지상파 못지않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규제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현행 법률의 한계 내지 공백 및 외국의 입법례

가) 악플 등과 관련하여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플 등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형법」도 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⁵⁶⁾

검찰이 지난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내린 처분을 살펴보면, 총 1만 1,415건 중 약 15%인 1,716건만 기소되었고(약식 포함),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약 30%인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렵게 기소되었더라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다수인 약 89%가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것도 100만 원이 가장 많이 선고됐다. 나머지 약 10%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한 법원은 “가해자의 글이 극단적 선택의 단초가 됐다”고 인정했지만,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⁵⁷⁾

56) 한국일보, “허위 비방>욕설>성적 모욕... 우리사회 ‘악플 감염’ 중증 단계”, 2020. 4. 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11149087289>, 2023. 8. 30. 방문)

57) 로톡뉴스, “악성 댓글 시달렸던 잼미, 김인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2022. 2. 24. (<https://lawtalknews.co.kr/article/OW4LILZS7CGP>, 2023. 8. 25. 방문)



이렇듯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경우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를 꼽았다.⁵⁸⁾ 이에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경고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규제 방안으로 언급되는데,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및 배상이 가능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의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다수 해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무려 1,130만 달러(약 14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악플을 달면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모욕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의 유명 여성 프로레슬러가 2020년 5월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 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면서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이에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 엔(약 9만 원)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 엔(약 273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⁵⁹⁾

(2) 또한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본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하여 악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포털이 댓글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

58) 헤럴드경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악플 처벌은 ‘숨방망이’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습니까]”, 2023. 7.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5000463>, 2023. 8. 30. 방문)

59) SBS뉴스, “‘악플러에 최고 징역형’...일본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 2022. 6. 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84729, 2023. 12. 1. 방문)

년 10월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호주는 2021년부터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여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악플 등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를 행정기관인 온라인안전국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2023년 6월 22일 트위터에 28일 안에 혐오표현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여 미이행 시 매일 70만 호주달러(약 6억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⁶⁰⁾

영국도 그동안 논의되었던 ‘온라인 안전법’을 2023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제공자는 악플을 포함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가 식별된 경우 이를 영국 통신규제청(Ofcom)에 보고해야 하며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또한 Ofcom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2달 안에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독일 역시 ‘네트워크실행법’을 통해 SNS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성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⁶¹⁾

나) 초상권 침해, 사칭행위와 관련하여

(1) 앞서 언급했지만,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SNS상에서 개인 간 초상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딱히 이를 조정할 기관이나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다.

(2) 사칭행위도 결국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하고 현행법상 사칭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SNS 도용 등 사칭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60) 뉴스1, “‘도넛은’ 국내 악플 현주소…해외는 어떻게 대응하나”, 2023. 7. 1. (<https://www.news1.kr/articles/5094651>, 2023. 8. 30. 방문)

61) 뉴스1, 앞의 기사.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타인을 가해·협박·위력·기망하기 위해 동의 없이 온라인 사이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타인을 사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09년 「형법」을 개정해 인터넷 타인 사칭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는데, 자신이나 타인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얻을 목적, 사칭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체포, 기소를 면하거나 형사사범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identity fraud)하는 경우 중범죄인 ‘사기’로 취급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1)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이 2010년경 헌법소원을 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술의 진보로 피해 범위나 규모가 한층 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다.⁶²⁾

(2)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5월 31일 발간한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 보고서⁶³⁾를 살펴보면, 2015~2016년부터 난민 유입에 따른 인종혐오적 정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SNS에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짜뉴스를 규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62) 한겨레, 앞의 기사.

63)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정책 리포트 2023년 2호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 2023년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5630&link_g_homepage=F)

〈표 1〉 유럽 각국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언론진흥재단)

표 2 유럽 각국의 가짜뉴스 관련 법적 규제 내용			
국가명	허위정보 규정의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특징
프랑스	- 선거 전 3개월 동안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정보조작대처법	- 선거기간에 국한 -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독일	- 허위정보뿐 아니라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모든 종류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함 - 디지털 플랫폼은 위법적인 콘텐츠나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고가 들어 오면 위법성을 판단한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함	네트워크집행법	- 플랫폼에 대한 규제 - 허위정보뿐 아니라 불법콘텐츠도 규제 대상
오스트리아	- 선거 또는 국민투표 기간 중 허위 뉴스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	형법 제264조	선거기간에 국한
폴란드	- 법원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정보"의 게시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지방선거법	선거기간에 국한
몰타	- 공중을 놀라게 하거나 공공의 선량한 질서 또는 평화를 교란하거나 대중 또는 특정 계층의 대중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허위 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형법 제82조	상시 적용
리투아니아	-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	상시 적용
루마니아	- 통신 규제 당국이 코로나19 보호 및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허위 뉴스를 조작"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	대통령령	-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일환
헝가리	-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가짜뉴스 대응법	-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일환이었으나 이후 공식적인 규제에 전환됨
그리스	- 시민들에게 우려나 공포를 유발하거나 국가 경제, 국방 능력 또는 공중 보건에 대한 대중의 신리를 저해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 3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형법 제191조	- 기존의 허위정보 처벌 규정을 강화 - 언론 소유주 및 경영진도 처벌
스페인	-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초법적 상설 기구를 설립	장관령	- 정부 각료들이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부터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하여 구글, 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실천강령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를 검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제정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에게는 2023년 8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상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방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DSA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시행하여 이용자 200만 명 이상의 SNS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혐오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나 댓글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9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있는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도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법무부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의 투명성 보고서에 담긴 불법 콘텐츠 신고 건수가 유튜브나 트위터보다 훨씬 적으며, 통계가 투명하지 않다”면서 이 법 위반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벌금 200만 유로(약 27억 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선거의 왜곡을 막고자 ‘정보조작대처법’을 시행하여 선거 전 3개월 동안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정보 게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는 행정부 기구나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 정보 유포에 대해 법원에 요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도 2019년에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SNS 사업자가 인종차별, 혐오발언 등 명백한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125만 유로(약 1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3) 한편, 대만은 2018년 일본 태풍으로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이 침수됐을 때 ‘중

국은 자국민 대피 버스를 보낸 반면, 대만은 국민을 방치했다’는 가짜뉴스로 비난에 시달린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이후 「재해 방지 구조법(災害防救法)」을 개정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10년 이하 징역,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2022년 10월경 유튜브 등을 통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음모론자에게 청구액 5억 5,0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9억 6,500만 달러(약 1조 3,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⁶⁴⁾, 2023년 4월경에는 도미니언 측이 투개표기를 조작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폭스뉴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폭스뉴스가 7억 8,75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⁶⁵⁾

또한 미국은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허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통신품위법」은 1996년 플랫폼이 외설, 폭력 등 불법적인 정보를 송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5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정되었으나, 이는 과잉 규제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면책(免責)조항인 제230조가 추가되었다. 그 후 미국은 인터넷 글이나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 사람에게 지우고, 이를 서비스한 인터넷 기업에는 위 제230조를 근거로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면책특권 덕분에 소송에서 자유로워졌고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짜뉴스, 음란물, 폭력 등 유해 콘텐츠가 SNS를 통해 확산되자 SNS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 콘텐츠 제

64) 중앙일보, “‘샌디훅 총기난사는 조작’ 가짜뉴스 대가는 1조 3800억 원”, 2022. 10. 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026>, 2023. 10. 31. 방문)

65) 경향신문, “‘미 대선 조작’ 가짜뉴스 보도한 폭스, 개표 업체에 1조원 배상”, 2023. 4. 19.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4192151005>, 2023. 12. 1. 방문)



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⁶⁶⁾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은 일단 2023년 5월 18일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구글 및 트위터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⁶⁷⁾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SNS가 보수 성향의 콘텐츠를 검열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잘못된 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원하고 있다.

3) 외국계 SNS의 수사 불협조 및 관할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외국계 SNS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만으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 내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계 SNS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관할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어서 시간, 비용 등 측면에서 사실상 구제가 힘들다.

나)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사업자들을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2018년 9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등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 개인정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대

66) 조선일보, “페이스북·유튜브 가짜뉴스 놔두면 법적책임 묻는다”, 2020. 10. 20.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0/17/FY7BQ4NUSZG67B5UPQ32623NFAQ/, 2023. 8. 30. 방문)

67) 이코리아, “미국 달군 '통신품위법 230조' 논쟁에 빅테크 손 들어준 대법원”, 2023. 5. 22.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72>, 2023. 8. 30. 방문)

리인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우리 법의 적용을 받으나 국내에 아무런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⁶⁸⁾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인 법인들이 모두 주소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가 같고 설립 시기가 유사하며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은 대리인을 해당 사업자의 ‘국내 법인’으로 변경하여야만 했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는 위 개정안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메타는 제3자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 코리아에서 글로벌 본사가 직접 설립한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로 변경하였고, 구글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구글 고객센터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이메일 서비스도 신설됐다.⁶⁹⁾

그러나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3개 법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국내 대리인 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한해서이고, 구글과 메타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고 있다. 각 법을 관할하는 부처마다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해석이 달라 페

68)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3월 발간한 ‘국내대리인지정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 등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업무, 개인정보 유출시 사실 통보, 정부조사 시 자료제출을 비롯한 협조 등을 맡는다.

69) 머니투데이, “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교체…‘페이퍼컴퍼니’ 대신 韓 지사로”, 2023. 7. 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516085078941>, 2023. 12. 1. 방문)



이퍼컴퍼니를 내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⁷⁰⁾ 또한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여전히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다) 일본은 해외 IT 기업도 자국 내에 법인登記하도록 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외국 기업도 일본 내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 소재지를登記해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00만 엔(약 9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기업의 일본 내 대표는 재판 출석, 배상 등의 책임도 지게 된다.⁷¹⁾

또한 일본은 2002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하여 가해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 10월 '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하여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까지 하였다.⁷²⁾ 이러한 개정으로 가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기간이 무척 짧아졌는데, 실제로 개정 직후인 2022년 10월 3일 일본 기업 투모로게이트가 자사 직원이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도쿄 지방재판소는 3일만에 트위터 측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70) 아시아경제, "페이퍼컴퍼니 한국법인으로 바꿨지만...반쪽짜리 국내 대리인", 2023. 7. 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1009113576063>, 2023. 8. 31. 방문)

71) 매일경제, 앞의 기사.

72)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개정 인터넷제공자책임제한법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평가", 2023년, 1면.

5. 향후 과제

가. SNS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1)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그동안 외국계 SNS 사업자들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그런 미국조차 최근 소셜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2023년 2월 16일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차단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발의하였고, 주정부에서도 유사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⁷³⁾ 또한 비슷하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적용 사례로 X(옛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어서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만약 SNS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⁷⁴⁾

SNS 기업들이 먼저 SNS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이에 맞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허점이 존재하므로 외부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언론중재법」도 방송법도 적용되지 않는 이상 현행 국내법으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외국 사업자를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시킬 필요가 있다.

2) 먼저 기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내용을 통일하여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재 대리인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21대 국

73) 미디어오늘, “미국 주정부·연방의회, 소셜미디어 규제 나선다”, 2023. 9. 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0083?sid=105>, 2023. 11. 3. 방문)

74) KBS뉴스, “EU, X 이어 메타·틱톡도 ‘가짜뉴스 확산’ 조사 착수”, 2023. 10. 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7479>, 2023. 11. 3. 방문)



회에는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특히 국내대리인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가해자의 정보 제공과 집행까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악플 등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작성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해외 IT 기업도 자국 내에 법인 등기하도록 규정한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외국 기업도 한국 내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들 기업의 한국 내 대표가 재판 출석, 배상 등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SNS 기업이 가해자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SNS 사업자에게 SNS에 악플, 가짜뉴스, 허위 정보 등 불법, 유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일정 기간 안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하여 방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문제있는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업도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나.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1)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면서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그동안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등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로,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플,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26일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위 개정안들이 시행된다면 SNS상 인권 침해의 많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경우 현재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적 해결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버나 SNS 게시물 작성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악플 및 가짜뉴스 방지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는데, 유튜버 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⁷⁵⁾ 그러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및 배상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2022년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등 연 35조 3,480억 원이다. 국내 GDP의 약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⁷⁶⁾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원의 명령 등을 통해 SNS 기업이 강제로라도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논의해볼만 하다.

2) 사칭행위와 관련하여서는,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SNS를 통한 사칭 행위 자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사칭 계정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사칭 계정 및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이다.

3)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유럽은 수년 전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를 법제화했지

7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22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20. 7. 22., 윤영찬의원 등 34인

76) 세계일보, “‘악플’에 매년 35조원 증발…‘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목소리도”, 2023. 7. 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12524368>, 2023. 11. 4. 방문)



만, 한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총 38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⁷⁷⁾ 21대 국회에서는 언론사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⁷⁸⁾ 등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식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⁷⁹⁾, 이에 대하여 사실상 언론장악으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형법」(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충분히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어 이중·과잉 처벌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4) 위와 같은 입법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와 같은 기존 제도를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들 수 있겠다.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SNS에 대한 인식 제고

SNS에는 악플, 루머, 거짓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넘쳐나는데, 전통 매체와 달리 게시

77) 국민일보, “‘가짜뉴스 꺼져!’ 철폐 휘두르는 유럽, 한국은 ‘뭉그적’”, 2023. 5. 3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16929>, 2023. 10. 31. 방문)

7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247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27., 윤두현의원 등 22인

7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122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8. 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결국 SNS 이용자가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Media·매체)와 리터러시(Literacy·문자를 쓰고 읽는 능력)를 합친 단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데, 빠르면 유치원에서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은 2010년 초부터 가짜뉴스 문제를 공론화했는데, 전통적으로 비판적 사고 교육을 중시해온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가하였다. 프랑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 포함했으며 국가고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⁸⁰⁾ 영국 학교에서는 1년에 6주 가량 교육을 하고 중등학교 졸업시험과 대학입학시험 선택 교과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 연구’를 개설했다. 핀란드도 2014년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7가지 교과 공통 역량에 멀티 리터러시, ICT역량을 포함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디어 교육을 초·중·등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1~10학년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했다.⁸¹⁾

이처럼 SNS가 먼저 시작되고 발전한 서구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위와 같은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다. SNS가 발전하고 사용자층이 넓어질수록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르면 유치원에서부터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SNS의 중독성, 위험성 등을 포함

80) 매일경제, “‘다음중 진짜 뉴스를 고르시오’... 美 뉴저지주 전학년 의무교육”, 2023. 10. 16. (<https://www.mk.co.kr/news/world/10851188>, 2023. 11. 3. 방문)

81)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19년, 6-17면.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홍보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 배포도 논의할 만하다.

6. 셰어런팅 : SNS상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 개념 및 사례

1)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2월 최근 3개월 이내에 SNS에 글을 게시한 사람 중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86.1%의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장을 기록(63.9%)하거나 자녀의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24.6%) 등이 이유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녀와 얘기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는 44.6%에 불과하여 과반수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있었다.⁸²⁾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013년 이처럼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의미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이 합쳐진 용어다. ‘셰어런팅’은 201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하여 2013년 영국 타임지 ‘오늘의 단어’로, 2016년 콜린스 사전 ‘올해의 단어’ 10개 중 하나로 각 선정될 만큼 서구권에서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⁸³⁾

셰어런츠(sharents=share+parents)들은 육아를 SNS에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

82) 세이브더칠드런, “‘SNS에 아이의 사생활 공개, 이대로 좋을까요?’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시작!”, 2021. 3. 4.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0882>, 2023. 10. 5. 방문)

83) 한국일보, “아이가 귀여워서 SNS 공유? 부모가 지켜야 할 '셰어런팅' 가이드”, 2022. 5. 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311040000752>, 2023. 10. 5. 방문)

고 육아 중 느끼는 고립감, 스트레스 등도 해소한다. 전문가들은 핵가족 사회로 변화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이 생겨났고 초보 부모가 육아 고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⁸⁴⁾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3년 7월 5일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두 자녀의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가려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두고 CNN은 “(저커버그가 자녀의) 얼굴을 가린 것이 일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저커버그가 수백만 명의 다른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들고서, 정작 본인은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⁸⁵⁾ 또한 미국 유명배우 기네스 펠트로도 2019년 SNS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딸 애플이 “엄마,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지 마.”라는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셰어런팅은 그동안 해외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국내에서도 점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한 배우가 2022년 5월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면서 탈의한 아들의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저 사진을 보면 기분이 어떨겠느냐”,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알몸 사진은 올리지 않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배우는 곧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84) 뉴스포스트, “[셰어런팅 주의보] SNS에 24시간 ‘자녀 일상’ 중계하는 나라”, 2021. 8. 18.(<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159>, 2023. 10. 5. 방문)

85) 한겨레, “저커버그도 ‘셰어런팅’ 걱정…자녀 얼굴 가려 업로드”, 2023. 7. 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9419.html, 2023. 12. 1. 방문)



3) 셰어런팅 사례는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담은 ‘육아 브이로그’ 콘텐츠를 찍거나 자녀가 주인공인 영상을 제작해 키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튜브가이드의 키즈 채널 누적 구독자 수를 살펴보면, 상위 8개 채널의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었고, 1위~10위의 2023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조회수는 총 2억 1454만 회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3B법칙(뷰티, 비스트, 베이비)’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키즈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⁸⁶⁾

나. 문제점

1) 셰어런팅은 일종의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폐해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셰어런팅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NS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교육기관, 자주 가는 곳 등 사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신원 도용, 유괴, 협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고, 이미지는 성범죄, 딥페이크 등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동을 향한 인신공격 등 악플도 문제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지금의 청소년이 2030년경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 규모는 연간 9억 1,4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절반 정도가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⁸⁷⁾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에는 엄마들이 아기 사진을 올렸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 2018년 9월 “음란 사이트에 자녀 사진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니

86) 뉴시스, “셰어런팅 입법 가시화…유튜브 키즈 콘텐츠는?”, 2023. 6. 4.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30_0002321395, 2023. 10. 3. 방문)

87) 한국일보, 앞의 기사.

삭제해준다면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 2018년 6월 “자녀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음란 사진, 음란 사이트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접수되었다.⁸⁸⁾

한편,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는 ‘미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인용하여 아동 유괴 범죄의 76%가 부모의 지인이었으며 부모의 SNS 중 77%는 ‘친구 공개’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⁸⁹⁾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1년 블로그에 공개된 아이의 실명과 사진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여 아이를 유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아기 실명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인터넷 카페가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⁹⁰⁾ 어느 남성이 2021년 10월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⁹¹⁾

EBS도 2017년 방영된 ‘다큐 시선(SNS 속 우리 아이 예쁘죠?)’에서 셰어런팅이 유괴로 이어지는 실험을 방송하였다.⁹²⁾ 아이가 잠시 부모와 떨어지게 됐을 때, 낯선 사람이 접근한다. 이 낯선 여성은 부모의 SNS에서 얻은 정보를 미리 암기하였는데, 아이에게 “돌잔치 때 필통 집었지?” 등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자 아이는 점차 경계를 풀고 5분도 지나지 않아 결국 여성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실험 전에는 “거의 모든 SNS 활동을 정리했고 대부분의 사진들을 비공개

88) 경향신문, “‘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2019. 2. 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2041126001>, 2023. 10. 3. 방문)

89) 뉴시스, 앞의 기사.

90) KBS뉴스, “SNS에 자녀 사진 무심코 올렸다가...”, 2016. 4.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58489>, 2023. 10. 3. 방문)

91) 중앙일보,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쫓다”, 2022. 7. 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336>, 2023. 10. 5. 방문)

92) EBS, “SNS 속 우리 아이 예쁘죠?”, 2017. 5. 19.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677540>, 2023. 10. 5. 방문)



설정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험이 끝난 후엔 “경계하는 마음이 커서 정말 몇 장 안 올려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봤다”며 당황스러워했다.⁹³⁾

2) 또한 셰어런팅은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 초상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세이프더칠드런은 “다수의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보호자가 올린 사진으로 디지털 세상에 신고식을 치른다. SNS에서는 아이가 우는 모습이나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등 아동이 성장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고 싶어 할 만한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런 게시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⁹⁴⁾

유니세프도 “무분별한 셰어런팅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 그 아동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지극히 사적이고 민망할 수 있는 아동의 사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성장 과정에서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⁹⁵⁾

93) 한국일보, 앞의 기사.

94) 경향신문, “‘좋아요’하다가 큰일납니다...소셜미디어 부모 지침서”, 2023. 6. 17. (<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306170600001>, 2023. 12. 1. 방문)

95) 유니세프,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은”, 2021. 7. 27.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41721>, 2023. 10. 5. 방문)

다. 외국의 대응 사례

1)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기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고 현재 세어런팅과 관련된 법 규정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회적으로 세어런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UN(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3월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각 나라에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 후속 법적·행정적 조치를 권고하였다.

EU(유럽연합)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 및 삭제권’을 명시하여 모든 정보 주체가 아동·청소년기에 수집된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미국도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에서 직접 게시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숨기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혐의가 적용되어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4만 5,000유로(약 64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2023년 3월 「세어런팅 제한법(sharenting law)」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관련 법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자녀의 연령,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모 모두 동의할 때까지 동의한 한 사람이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세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 아동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산



모들의 출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금지하기도 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일이라면 아동의 인격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⁹⁶⁾

베트남은 지난 2018년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허락 없이 SNS에 올리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최고 5,000만 동(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⁹⁷⁾

2) 유니세프는 아동이 거부한 콘텐츠,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아동의 자존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진(속옷 차림이나 알몸 사진 등), 아동의 물리적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⁹⁸⁾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SNS 이용을 위해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⁹⁹⁾

96) 머니투데이, “도 넘은 자식사랑 ‘셰어런팅’을 지워라”, 2022. 9. 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109597881816>, 2023. 10. 5. 방문)

97) 경향신문, 앞의 기사.

98) 유니세프, 앞의 글.

99) 세이브더칠드런,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2021. 5. 3. (<https://www.sc.or.kr/news/magazineView.do?NO=70949>, 2023. 12. 1. 방문)

1.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2.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3.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세요
: 게시물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4. 아이의 개인 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해 주세요
5.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6.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 목욕 사진, 수영복 사진, 속옷 차림의 사진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7.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8.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세요
: 게시물 하나에 담긴 정보는 미미해도 모이면 상세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는 2019년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의 라이브 스트리밍(생방송) 금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에 대한 댓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이들의 영상을 수집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¹⁰⁰⁾

라. 국내 논의 및 대응

1) 우리나라는 현재 세어런팅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이제 막 논의와 법제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어런팅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여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는 본인

100) 시사IN,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2019. 10. 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2>, 2023. 10. 5. 방문)



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부터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인데, 특히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세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범죄 노출 가능성 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녀의 연령대별 교육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겠다고 했다.¹⁰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율점검용 안내서이다.¹⁰²⁾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 미만일 때 올렸던 인터넷 게시물 중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을 정부가 대신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까지 적용하기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잇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방송과 TV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¹⁰³⁾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양해야 하는 13가지 유형을 포함하여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 구하기’, ‘1일 6시간 이상의 생방송 진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1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2. 7. 11.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15910>, 2023. 10. 2. 방문)

1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2. 7. 22.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

103)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 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 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법안들이 자율 지침이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들과 제작자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후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석이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울타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¹⁰⁴⁾

3)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디지털화로 인해 아동이 출연하는 개인방송 및 콘텐츠가 증가하자 2023년 1월 ‘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 인권 보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¹⁰⁵⁾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셰어런팅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을 할 경우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디지털윤리 가족캠프’를 개최하여,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올바른 방법,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자녀 보호기능 사용법 등을 포함한 디지털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7. 결 론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정부는 2023년 10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메타가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목표로 이용자들

10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미디어 속 아동,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2021. 3. 17. (<http://www.korea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904>, 2023. 10. 2. 방문)

105)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인권보호 체크리스트”, 2023. 1. 13.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33&nttSn=4675>)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정부는 2023년 10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메타가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목표로 이용자들을 SNS에 중독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 200개 지역 교육청은 지난 2023년 7월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¹⁰⁶⁾

물론 SNS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장점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이 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SNS에 미약하게라도 중독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들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일 수도 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러한 SNS의 특성을 잘 깨닫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방송과 신문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으나 그만큼 감시받고 제한된 것과 달리 현재 SNS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른 탓인지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계 SNS 기업들도 관리·감독하고, 국제적으로 수사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국민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SNS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게 되기를 바란다.

106) 한국일보, “‘아이들 집중력 착취해 저커버그만 부자 됐다’...미국 40개 주 집단소송”, 2023. 10. 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512130003573?did=-NA>, 2023. 12. 1. 방문)

토론문

SNS와 인권 토론문

이권일¹⁾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먼저 대한변협의 2023년 인권보고대회에서 신은영 변호사님의 'SNS와 인권'이라는 훌륭한 발제문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라고 불리는 급격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이 ICT 기술을 통해서 제공되고, 앞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질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주지만, 또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특히 법적 관점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실제 발생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고민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발제는 특히 10여년 전에 등장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위 SNS라 불리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문제 사례들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 글로벌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담당자나 관할 문제 등에 대해 현재까지의 문제와 논의, 관련 판례, 앞으로

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대책에 대해 잘 논의하고 있어서 학계와 실무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셰어런팅에 대해 자세하게

워낙 다양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으로 토론할 것은 없고,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을 보충하고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고전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 다음카페와 블로그가 한동안 유행하고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SNS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SNS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었고, 유튜브를 SNS 범위에 넣을 것인지, 메신저 서비스가 SNS인지도 한동안 논의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들이 SNS라는 용어보다는 플랫폼서비스라는 용어로 통칭되어 사용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최근 제정되어 올해부터(초대형플랫폼은 작년부터) 시행되는 유럽디지털서비스법(DSA)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서비스라는 카테고리에서 SNS, 유튜브 등 발제에서 논의되는 서비스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 미국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 에번 스피겔, 틱톡 추쇼우즈, 엑스(X 옛 트위터)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 CEO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SNS 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는 마크 저크버그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²⁾

2) 동아일보, “SNS가 사람 죽여” 난타당한 저커버그, 유해콘텐츠 청문회서 “죄송” 2024.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201/123349282/1> 등

1. SNS 규제방안으로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SNS와 관련한 문제들은 SNS가 등장하면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잊힐권리라고 하는 논의도 결국 철없는 시절 SNS 올린 사진들이 나중에 취업등에 문제가 되어 활발히 논의되었고,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등도 SNS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많이 문제되었던, 최근 선거와 함께 다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 논의도 SNS를 통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청문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동성착취 등의 더 강력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와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SNS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됨에 따라 특히 최근에는 SNS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독일의 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이나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등이 이러한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제와 피해자 구제를 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작년에 계속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입니다.³⁾

독일 네트워크법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서비스제공자가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24시간~7일이내에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태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유로(f nf Millionen Euro)의 벌금(Bussgeld)⁴⁾을 부

3) 미디어오늘, 정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3.9.2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3> 등

4) Bussgeld의 번역이 우리의 법용어에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이 있으나 발제문에는 벌금으로 설명하고 있어 벌금으로 기술한다. 다만 벌금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검열을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권력이 제재를 하는 형태의 규제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도 마찬가지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해 콘텐츠를 스스로 검열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독일 네트워크법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 중 월평균활성이용자수가 4,500만명이 넘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더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여 스스로 점검하여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 의무까지도 부과하는 등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감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규제방식이 공법적 관점에서 어떠한지는 따로 논의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⁵⁾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의 경우도 작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부부처에서 계속 (규제된 또는 강제된) 자율규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적 빅테크기업의 관할문제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대부분이 국내기업이 아니라 외국기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실제 소송에 있어서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표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판례에 대해 잘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5) 이를 브뤼셀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여 이 논의에 대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U사법재판소의 소위 구글 판결(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⁶⁾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주로 잊힐 권리(검색배제권에 국한되지만)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유명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의 선제문제로 관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스페인 구글은 광고업무 등을 위한 지점에 불과하므로 직접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EU 법원은 구글 스페인도 구글의 자회사로 정보의 처리자(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수단은 그러한 활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법에서도 최근 개정을 통해 독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독일에서의 절차집행을 위한 공인 대리인(Zustellungsbevollmächtigten)을 독일 내에서 지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제5조)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에도 제13조에서 유럽연합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한 곳에서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법인 또는 자연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 규정과 관련하여 발행된 결정의 수령,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관할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가 해당 제공자 외에 또는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해당 법정 대리인이 거주하거나 설립한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는 더 논의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판례와 법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alez [2014]



3. 유튜브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튜브를 중심으로한 시청각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언론, 통신, 인터넷서비스 규제 관련 규정으로 정의하거나 규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방송과 통신을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규제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에 대해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이러한 규제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튜브의 부작용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셰어런팅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있어 온 문제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SNS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SNS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 부모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문제는 유교사상이 전제되어 있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와 프라이버시가 발전한 서구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에 서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이에 대응하여 이미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있는 등 자세한 논의는 발표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여 자신과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는 등 정부차원의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책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정서에서 셰어런팅 문제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느정도까지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

입니다. 발표자께서 셰어런팅에 관하여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발제문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발표를 해주신 신은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문

SNS와 인권 토론문

이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지선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1. 서론

SNS는 신문, 방송 등 과거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넘어서 이미 우리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획득 및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SNS가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SNS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SNS와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발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통하여 SNS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태와 현재의 입법현황을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셰어런팅’ 등 다소 생소한 개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발제자께서 상세히 언급하신 쟁점들 중 몇 가지와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SNS와 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하여

(1)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는 인터넷 초창기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SNS 사용 증가와 함께 그 피해 건수와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악플로 인하여 유명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그 폐해가 확산되자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전히 악플러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가해자의 글이 극단적 선택의 단초가 됐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너무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자율규제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악플에 대한 신속한 삭제조치, 가해자 정보 제공,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가짜뉴스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 등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다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다른 범죄 기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그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근거없는 루머가 난무하는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정치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 양극화로 극단적 지지자들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버 등이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확증편향'을 가지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를 토대로 또다른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오, 혐오 정치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극우 음모론에 심취한 한 30대 남성이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망상에 취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튜브에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특정 정치인의 강성지지자들은 유명 팝스타가 상대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공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뉴스라고 이름붙여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SNS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들에게 허위, 가짜뉴스의 유포를 방지할 책임을 지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셰어런팅’ 관련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셰어런팅’은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로서 이미 서구권에서는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상과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일상을 유튜브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관념들이 아직까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아동의 동의없이 그들의 사생활을 SNS에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 또한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가진 엄연한 독립된 인격 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SNS에 사생활이 노출되어 최악의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어런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SNS를 통한 마약범죄, 성착취 관련

최근 SNS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1만 8,000여개에 이르는 등 2020년에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SNS를 통한 그루밍 범죄, 성착취, 성매매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는 주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마약의 주된 유통경로가 SNS로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10대들이 단순투약 뿐만 아니라 유통에까지 가



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SNS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 파급력이 크고, 젊은 층이나 청소년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연방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등 대형 SNS 기업의 CEO 5명이 SNS로 인하여 자녀가 성 착취와 자살, 마약 거래 등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SNS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입게 되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3. 결 론

SNS의 발달이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SNS로 인하여 수많은 폐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SNS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영리를 취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이 얻는 수익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상원의원은 SNS 기업 CEO를 상대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SNS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함축하여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인 쇄 2024년 2월

발 행 2024년 2월

발 행 인 대한변호사협회

발 행 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2~3층(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TEL. 02-2087-7730
FAX. 02-3476-7770

인 쇄 처 후디자인 TEL. 02-2269-5134

이 책을 무단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 책에 게재된 글을 사용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